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청조260518113
평가금액	3,880,000,000 원
평가기관 / 평가자	청조감정평가사사무소 / 김기윤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7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청조감정평가사사무소 / 김기윤	eyJhbGciOiJFUzI1Nils	2026-06-05 17:37: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명: 공작아파트 에이동동 6층 611호 소재
물건 (2026-04267-A01)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청조26051811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조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10-3738-7888 FAX. 0505-182-3519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기윤



(인)

감정평가액	삼십팔억팔천만원정 (₩3,880,000,000.-)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 지방세)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재선 (2026-04267-A0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 참고사항	-	2026.05.23 2026.05.23	2026.05.23 ~ 2026.05.23	2026.05.27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 이	구분건물	1 하 여	- 백	3,880,000,000
	합 계					₩3,88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 평가개요

1. 평가목적

평가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나루역(서울지하철 5호선)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공작아파트 제에이동 제6층 제611호)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에서 공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건입니다.

2. 평가기준 및 근거

평가대상물건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3. 감정평가 대상물건

1) 대상물건 개요

(1) 건물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제에이동 제6층 제611호			
건물 명칭	공작아파트			
건물 개황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총세대수
	16,830	16,384.25	1,260.44	373
	주구조	주용도	층수	사용승인일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5층	1976 08.06

※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2) 감정평가 대상물건

일련 번호	동	층	호	용도	전유 면적 (㎡)	공용 면적 (㎡)	계약 면적 (㎡)	전용율 (%)	대지권 면적 (㎡)
(가)	에이	6	611	아파트	126.02	(보이라실 및 변전실) 13.09	139.11	90.59	52.89

※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표시

2) 대상 물건 현황 사진: 별지 참조

3) 토지이용계획사항 (공법상 제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과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 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 26. ~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024-04-18) (기간:2025.4.27. ~2027.4.26.),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025-10-15) (지정기간: 2025. 10.20~2026.12.31. 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선 (건축과 문의)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5월 23일입니다.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 1) 실지조사는 2026년 5월 23일에 수행하였습니다.
- 2)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평가대상물건의 내부상태를 실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도 및 신뢰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각종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부 배치도 및 각종 현황 설명자료, 통계자료 등)와 외부 관찰 등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6.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것입니다.
- 2) 의뢰인이 제시한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1) 대상 물건의 소재지, 구조, 면적, 도시계획사항 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2) 대상물건 위치 확인은 현황 점유 사용중인 부분을 기준하였으며. 내부 조사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외부 관찰 및 탐문 조사 등으로 확인하였는 바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공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감정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 하였으므로 공매 진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I.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 관련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제 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 [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평가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규정 검토 및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는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합니다.

III. 평가대상물건 감정평가액 산출 개요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격 결정

1) 개요

평가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이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이므로 동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는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2). 적용 감정평가방법

평가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평가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3) 동 단지내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층/호	전유 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1)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C/11 /1106	125.75	52.89	3,770,000,000	29,980,000	2026.01.12
(2)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5 /510	126.02	52.89	3,500,000,000	27,773,000	2025.06.27
(3)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2 /202	126.02	52.89	3,100,000,000	24,599,000	2025.03.19

※출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단가 = 거래금액 / 전유면적

4) 동 단지 내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층/ 호	전유 면적 (㎡)	대지권 (㎡)	평가금액 (원)	평가단가 (원/㎡)	기준 시점	평가 목적
(A)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 9/910	126.02	52.89	3,916,000,000	31,074,000	2026. 04.23	경매
(B)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 6/610	126.02	52.89	3,290,000,000	26,107,000	2026 01.01	시가 참고
(C)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 11/1110	126.02	52.89	3,500,000,000	27,773,000	2025 12.15	시가 참고

5) 비교사례 선정

위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는 인근 유사형 물건의 거래사례, 평가사례들이며 그 중 당해 평가대상 물건과 인접하여 위치하며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1)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동/층/호	전유 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1)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C/11 /1106	125.75	52.89	3,770,000,000	29,980,000	2026.01.12

6) 시점수정치의 결정

: 대상물건은 아파트이므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내용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구분	일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시점수정치	비고
거래사례	2026.01.12	98.8 (2025.12월 지수)	102.5/98.8 ≒1.03745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서울 서남권
평가 기준시점	2026.05.22	102.5 (2026.04월 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유형별 매매가격지수)

7) 가치형성요인 비교

각종 요인 및 비교 항목		비교치	비고
일반요인		1.00	평가대상물건과 사례는 동일 사회·경제권역에 속하므로 상호 대등함.
지역요인		1.00	평가대상물건은 거래사례와 인근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 요인 대등함.
단지 외부 요인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1.00	평가대상물건과 거래사례는 동일한 단지내에 위치하므로 동 요인은 동등함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생산자 서비스 종사자 밀도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등		
단지 내부 요인	건물의 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1.00	평가대상물건과 거래사례는 동일한 단지내에 위치하므로 동 요인은 동등함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정도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0.99	평가대상물건은 6층이며 거래사례는 11층인바 층별효용에 있어 평가대상물건이 열세함.
	위치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		
	주출입구와의 거리 등		
누 계		0.990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0.99 \approx 0.990$

8) 평가가액의 결정

(가) 비준단가 산정 및 결정

평가기준시점	비교거래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치	가치형성 요인 비교치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2026.05.23	29,980,000	1.000	1.03745	0.990	30,791,723	30,800,000

※ 특별한 사정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1.00)

※ 산출단가의 유효숫자 네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가격 결정함.

(나) 시산가액의 결정

평가기준시점	결정단가(원/㎡)	전유면적(㎡)	산정가격(원)	결정가격(원)
2026.05.22	30,800,000	126.02	3,881,416,000	3,880,000,000

※ 산정가격의 천만원 이하에서 반올림하여 가격 결정함.

(다) 평가대상물건 단지(공작아파트)내 방매가격에 대한 자료

동/층/GH수	전유면적 (㎡)	대지권 (㎡)	방매금액 (원)	방매단가 (원)	확인시점
C/2/-	125.75	52.89	4,000,000,000	≒31,810,000	2026.05
A/8/_	126.02	52.89	4,000,000,000	≒31,740,000	
※ 위 방매물건은 동 단지내에 위치한 물건이며, 네이버페이부동산사이트에 수록된 방매 물건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탐문 조사한 내용임.					

(라)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 평가대상 구분건물의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과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정상적인 거래시세, 거래사례, 평가사례, 방매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끝**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건물의구조 및 이용상태
4. 위생,냉난방시설등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 도로상태 및 주차장시설등
7.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8. 공부와의 차이	9. 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나루역(서울지하철 5호선)서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물 (공작아파트 제에이동 제6층 제611호)로서 인근일대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원 및 각급 학교 등이 혼재된지역으로서 제반 주거환경 양호함.

2. 교 통 상 황

평가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북동측 인근에 서울시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안근 간선로변에 시내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함.

3.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프스라브지붕 12층 건물내 제6층 제610호로서 (사용승인일:1976.08.06)

*외벽: 세멘물탈위 수성페인팅,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아파트(방4,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2, 다용도실 등

4. 위생,냉난방시설등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지역난방(열병합)설비 및 승강기설비, 화재경보 및 옥내소화전 설비 등을 갖추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한 토지 및 도로와 동고이며 평탄함.

6. 도로상태 및 주차장시설등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30미터 포장도로에 북서측으로 폭 약15미터 도로에 삼면으로 접함

*156대 주차장 공간 확보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 상황	3. 건물의구조 및 이용상태
4. 위생,냉난방시설등	5.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 도로상태 및 주차장시설등
7.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8. 공부와의 차이	9. 임대관계 및 기타

7. 도시계획 및 기타 공법관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종로1류(폭 20m~25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법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과문의)<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문의)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4-18) (기간:2025.4.27.~2027.4.26.),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선(건축과 문의)

8. 공부와의 차이

: 없음

9. 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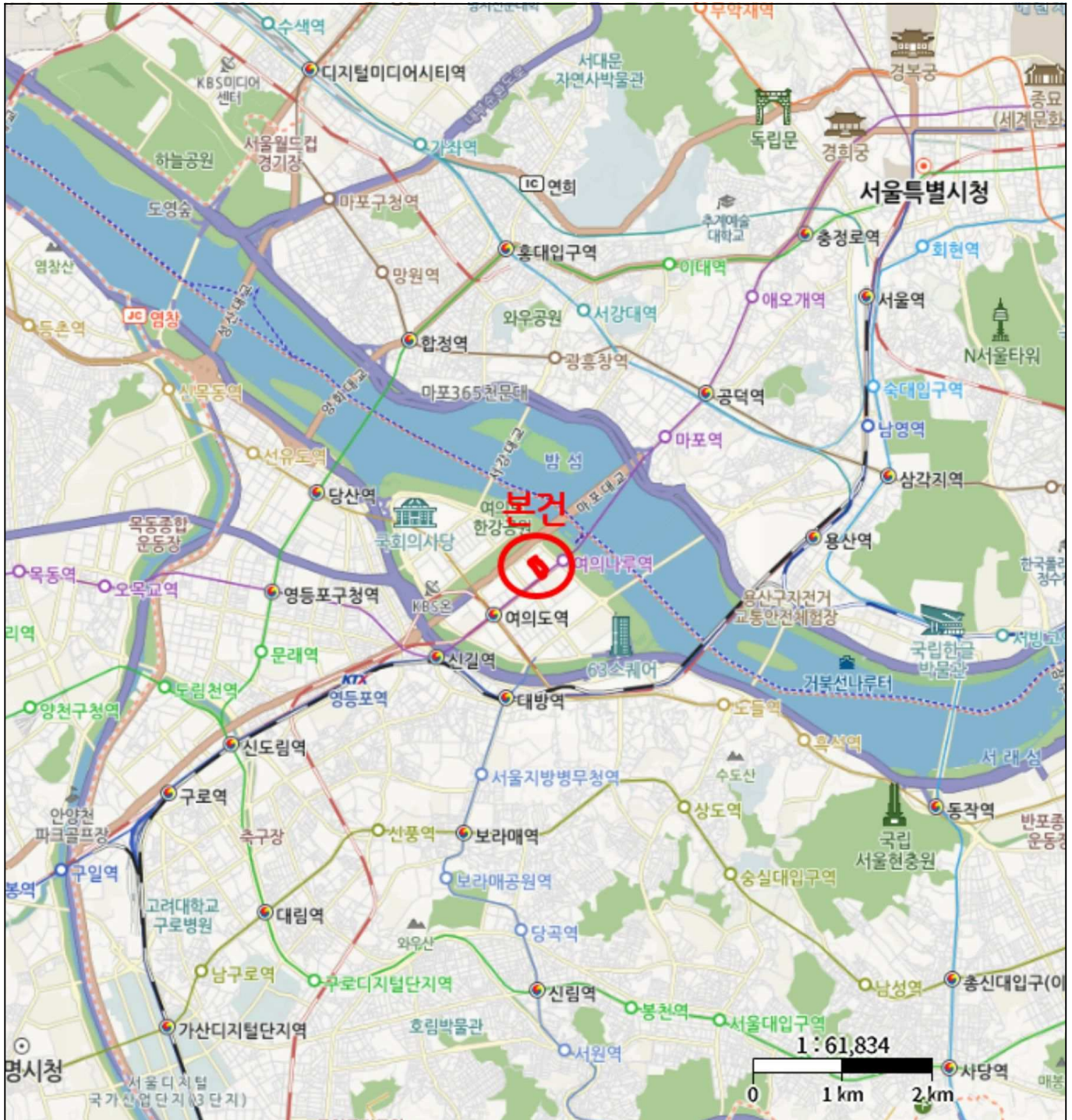
: 미상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에이동 6층 6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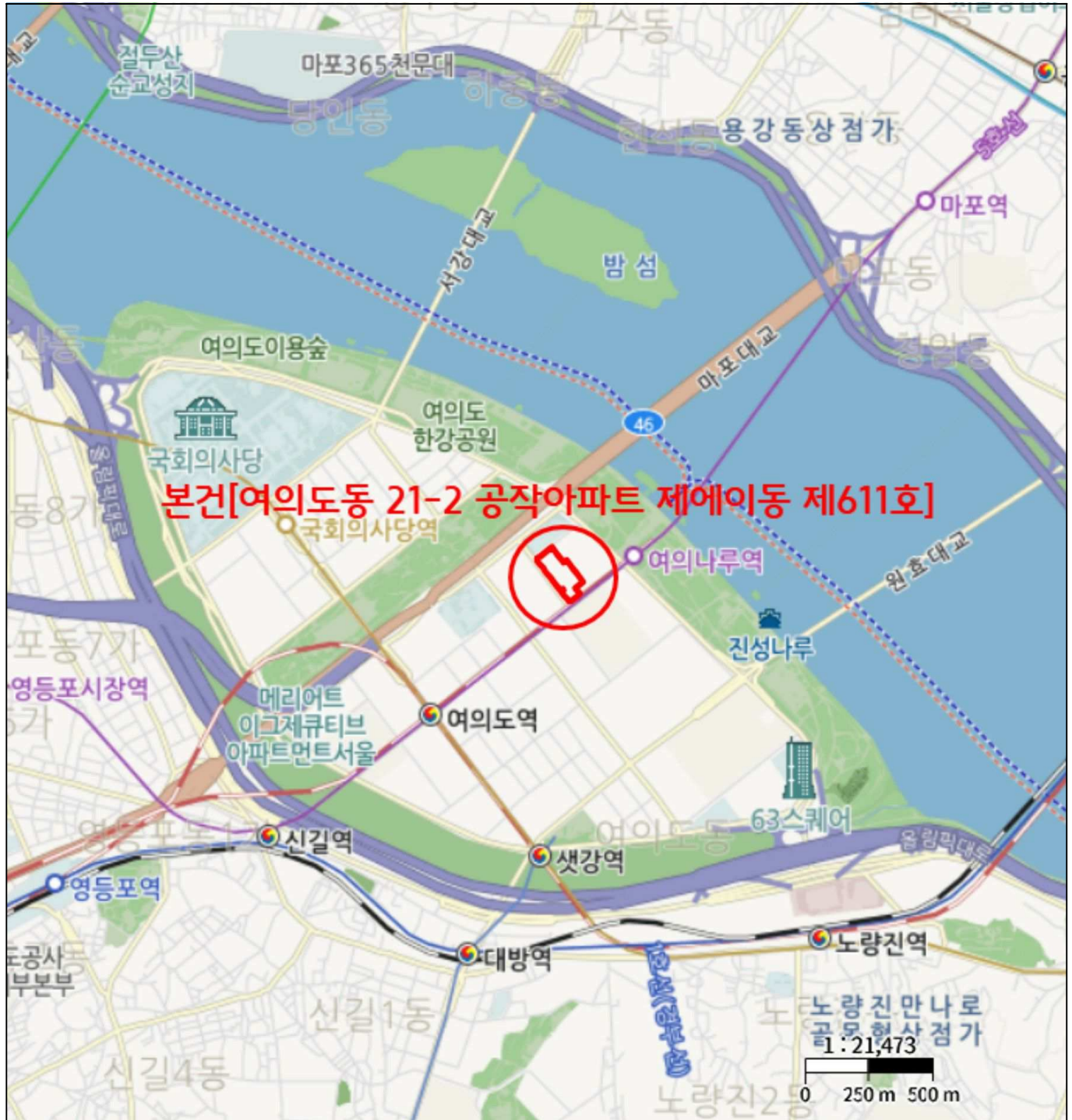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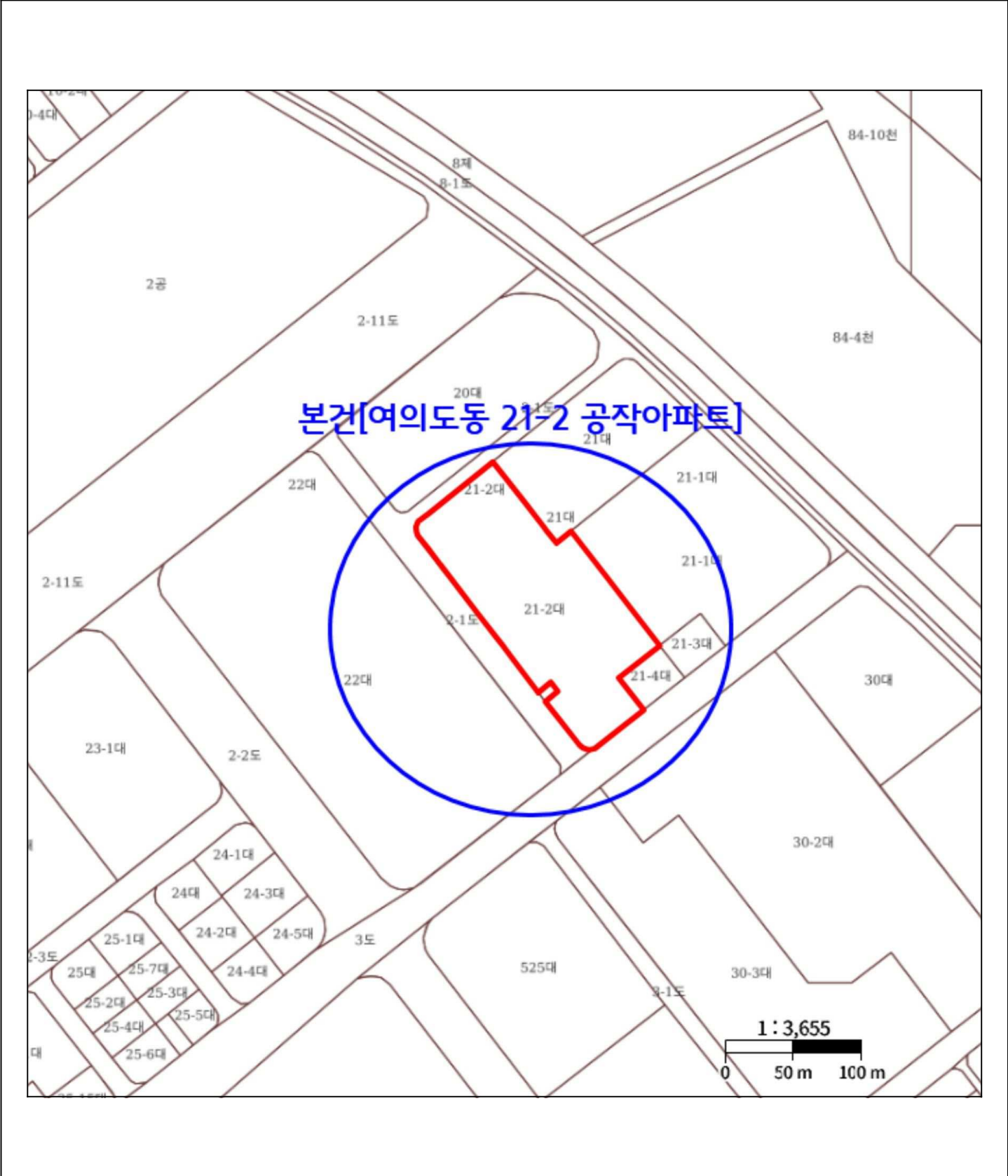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에이동 6층 611호



지 적 개 황 도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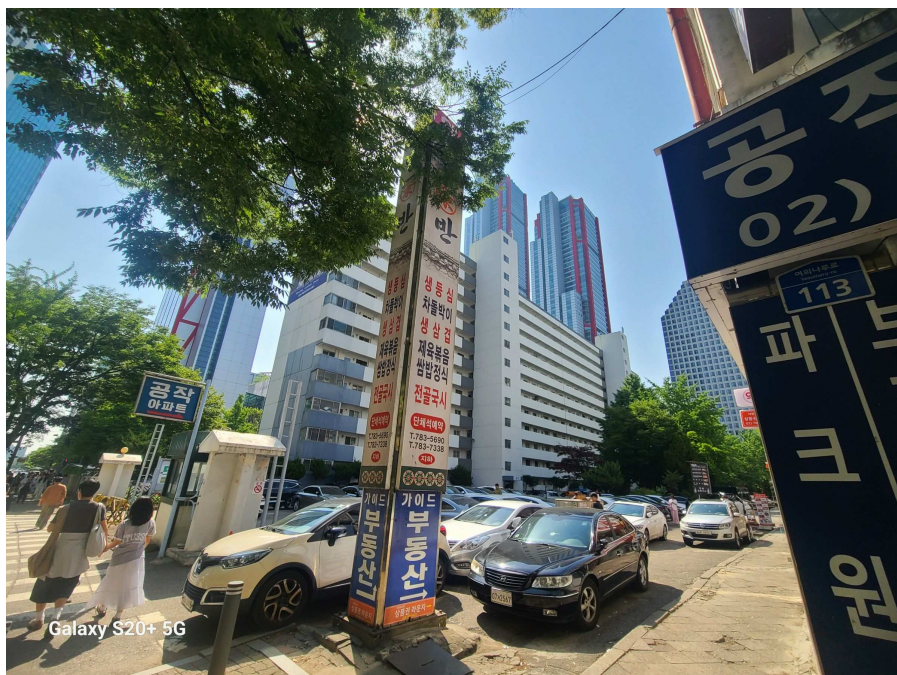


1본건(공작아파트단지)주출입구

사 진 용 지



2본건 전경1[공작아파트 에이동]



3본건 전경2[공작아파트 에이동]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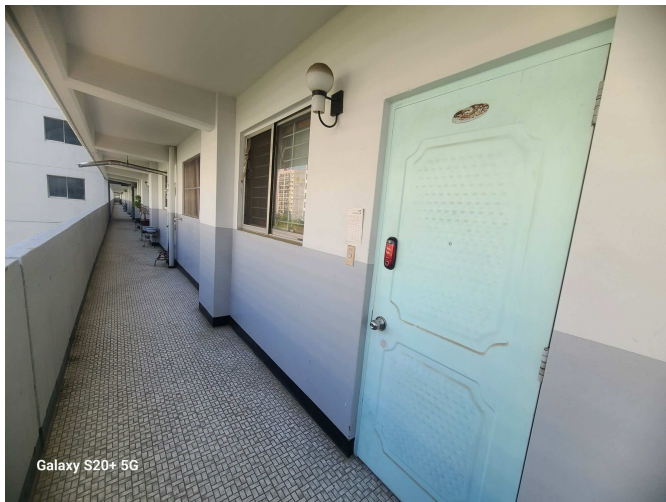


4본건(공작아파트 에이동)출입구



5본건 6층 복도 현황

사 진 용 지



6본건(공작아파트 에이동 6층 제611호)출입문



주위환경[본건 남동측 도로변 일대 상황]

회보서

우)033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진관동)은평뉴타운파크앤티워
제비동315호
E-Mail : kydmgkim1@kapaland.co.kr

TEL. 010-3738-7888
FAX. 0505-182-3519

문서번호 : 청조260518113

시행일자 : 2026-05-27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

참 조 :

제 목 : 감 정 의 회 에 대 한 회 보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저희 청조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05.18자 귀 제 『2026-04267-A01』 호로 의뢰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에이동 6층 611호 소재 물건 시가감정 (2026-04267-A01)』 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청조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전화: 010-3738-7888, FAX: 0505-182-3519)

문서번호 : 청조260518113

수 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장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6.05.18 자 귀 제 『 2026-04267-A01 』 호로

의뢰하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에이동 6층 611호 』 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3,499,000	1,195,000+2,880,000,000 x 8/10,000=3,499,00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사진촬영비 등
실	여 비	40,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	
비	기타 실비	9	
	소 계	40,009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3,539,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353,900	
합 계		3,892,9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3,892,900	

불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KB 연신내 : 02480104532272(예금주:김기윤)

청조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김기윤

